

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·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,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는 <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>을 진행합니다. 예술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**예비 창업자 및 예술분야 창업기업***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?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(업력 7년 이내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)을 모두 포함)

* 문화예술진흥법(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)이 규정하는 "문화예술"(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)의 예시 영역을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
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I

사업 개요

- (사 업 명)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
- (지원목적) 예술분야 예비창업자·초기기업의 비즈니스모델(BM)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 강화 지원
- (협약기간) 2026년 8월 ~ 11월(약 4개월)
- (선정규모) 총 15개사 내외
- (지원내용) ①고객×시장검증 간접 지원(5백만원 상당) 및 ②역량 강화 교육, 멘토링·컨설팅 ※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III. 지원 세부내용 참고

II

신청 대상 및 요건

- (신청대상) 공고일 기준('26.7.27.(월)) ①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②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(개인 및 법인사업자)

<신청자격 및 업력산출 기준 참고사항>

① 예비창업자	○ 공고일('26.7.27.(월))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※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개인·법인설립 미등록자여야 함 ○ 공고일('26.7.27.(월)) 이후 사업자 게시한 경우, 예비창업자로 신청 ○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본 사업 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(사업자등록 필수)
② 개인 및 법인사업자	○ 신청가능 업력 : 2023년 7월 28일 ~ 2026년 7월 27일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 ※ 단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에 의거,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*를 통한 법인전환 시(동종전환 및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 *포괄양수양도 :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하고,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
공통	○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 및 공동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, 대표자(공동창업 예정자) 전원이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<예술분야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참고사항>

구분	신청대상 예시
예술분야 기획·제작	- 공연·전시·문학(장르 융합, 기술결합 작품 포함) 기획 및 운영 사업체 - 예술 콘텐츠·제품 기획 및 개발, 생산(VR, XR, 굿즈, 음원, 아트상품, 도록 등) 사업체 - 예술인(공연예술인·시각예술인·문학인 등) 매니지먼트 사업체 등
예술분야 유통·배급	- 예술작품(공연·미술·문학 작품 등)을 온·오프라인 판매 및 대여(구독서비스 등) 사업체 - 공연·전시 티켓, 용품(악기·악보·공연소품·화구 등) 온·오프라인 판매 및 중개·대행 사업체 - 아트상품·굿즈 온·오프라인 판매 및 중개·대행 사업체 등
예술분야 서비스	- 공연 실연·미술작품 제작 관련 기술 제공 사업체 - 예술분야 행사, 상품, 콘텐츠 홍보마케팅 대행 사업체 - 예술작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(IP) 기반 서비스 사업체 - 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매개 서비스 사업체

○ (신청제외 대상)

-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
-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. 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. 다만, 구성원에 포함된 그 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
-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는 신청이 불가함

<⑥항 예외사항>

-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경우
-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-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(분할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. 단,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< ⑧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-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
-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- 신청일 기준 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·보험업, gambling·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
III

지원 세부내용

○ (지원 세부내용)

고객×시장검증 간접 지원

- 고객×시장검증 간접 지원(5백만원 상당)

집중 보육 프로그램

지원구분	세부내용
기업진단	○ 사업 역량 진단 및 핵심성과지표(KPI) 설정
역량 강화 교육	○ 기본 실무역량 강화 집중 교육
전담 멘토링	○ 사업 전반에 대한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담 멘토제
맞춤형 컨설팅	○ 사업화 준비를 위한 사업모델 및 MVP 설계 구축 컨설팅

성과공유회

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기업 2개 사 선발
(*2027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서류심사 면제 혜택)

IV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(신청기간) 2026년 7월 27일(월) ~ 8월 10일(월) 18:00까지

- ※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- ※ 접수 마감 기한 18:00 이후 이메일 수신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(신청방법) 이메일 제출(jhmoon@sigong-ip.com)

- ※ 이메일 제출 외 우편, 방문 접수·제출 불가

○ (제출서류)

제출서류			파일형식
필수	1. [양식] 프로그램 신청 통합서식(필수)		HWP
	2. 증빙서류(필수)		PDF 변환하여 제출
	예비 창업자	① 사실증명서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- 대표자 제출 - 사전 발급 필수(*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 약 3시간 소요)	
	개인 및 법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-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
		②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 - 사전 발급 필수(발급 신청 후 약 3시간 소요)	
		③ 법인등기부 등본(해당 시) - 법인사업자만 해당(말소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)	
④ 포괄승계계약서(해당 시) -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*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,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 포괄양수양도: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하고,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			
선택	해당 시	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(보유 시) - 표지 포함 10p 이하 PDF 파일로 제출	

※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 활용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6.7.27.(월))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
○ (주의사항)

- 신청서 오제출, 제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자동 제외됨
- 신청·접수 마감('26.8.10.(월), 18:00) 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
- 이메일 제출 외 우편,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
- 접수한 서류는 철회 및 수정이 불가함

V

선정기업의 의무 및 역할

○ (지원 및 수행 일반)

-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, 검증비용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사업 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선정기업은 센터와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 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- 선정기업은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사업 전반에 걸쳐 예술인의 인권존중·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
-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(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)하거나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, 해당 단체는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될 수 있음
- 저작권, 특허권, 초상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기업에게 있으며, 추후 문제 발생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검증비용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검증비용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검증비용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**선정 이후 선정기업 대표(선정자)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하며, 검증비용 전액 반납하여야 함**
- 선정기업은 확정된 시장검증 비용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운영사, 운영사의 전담멘토와 협의한 후 시장검증 비용 간접 지원 예정
- 사업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제재 가능함
-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검증 비용 집행이 있을 경우 사업 취소, 검증 비용 반납 조치함
- 최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, 차기년도 초기창업 공모사업의 지원조건의 적합성에 따라 혜택이 최종 결정될 수 있음
- 예비창업자의 경우, 본 사업 기간 내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창업해야 함(사업자등록 필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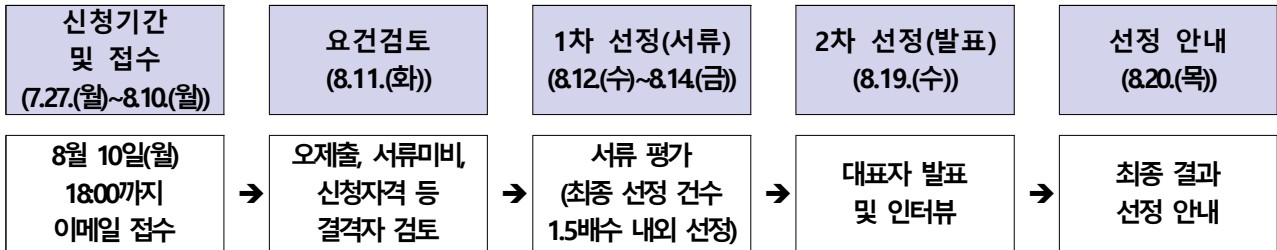
○ (사업 종료 후)

-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, 조사, 정보 제공 등의 센터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VI

평가 및 선정

- (선정일정) 2026년 8월 2주 ~ 8월 3주(예정)

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- (선정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선정
 - ※ 2차 선정(발표)의 경우 1차 선정기업 대상으로 방법 및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
- (선정기준)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기반
 - ①창업 아이디어 및 문제인식, ②사업화 가능성, ③고객·시장검증 계획,
 - ④대표자 및 팀 역량, ⑤예술분야 연관성 및 기여도
- 사업 운영 일정(안)

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VII

문의

- (문 의 처)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운영국
- (문의방법) 전화 및 이메일
 - (전화) 02-6925-3357 / 02-6453-9161
 - ※ 전화문의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30~13:30 제외)
 - (이메일) jhmoon@sigong-ip.com